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 인증 가이드

2021. 08.

목 차

I . 단체표준 인증 신청 전 확인 · 숙지사항 -----	3
II . 단체표준 인증 심사 신청 (서류) -----	3
III . 인증심사(공장심사) 준비사항 -----	4
IV .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 시험 · 검사) -----	4
V . 제반 비용 (수수료)-----	6
VI . 제품의 표시사항 -----	6
별첨 1 .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서』 -----	7
별첨 2 . 『제조가공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 -----	8
별첨 3 . 『인증업무 절차도』 -----	9
별첨 4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검사항목별 시험 수수료』 -----	10
별첨 5 . 『제품의 표시방법』 -----	13
☛ 인증심사 및 인증에 관한 문의 연락처-----	13

I.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 전 확인 · 숙지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표시 인증 신청 전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홈페이지(www.kfpec.or.kr)

가. 단체표준 인증 가이드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SPS-KFPC B 0001-7231:2019)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 인증 심사기준

라. 공장심사보고서 (양식)

〈비고〉 사내표준 구축(사규 작성) :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공장심사 보고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작성 하셔야 합니다.

(※ KS인증공장의 인증시스템 : 절차서,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단체표준 인증 심사 신청 (서류)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합니다.
(희망 공장심사일자 1개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원활한 인증업무를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조합에 정식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조합 인증담당이사(가이드 맨 뒤 ☎ 인증심사 및 인증에 관한 문의 연락처 참조)와 반드시 협의 · 검토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서 (별첨 1)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KS, KC 또는 ISO 9001 인증서(사본 / 해당하는 경우)

※ ISO인증서에는 품목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의 명사와 『KAB 또는 IAF』 로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라. 사내표준 목차(사본)

마. 인증신청품목의 모델별 도면(구조 확인이 가능한 것)

바. 제품사진 (또는 캐탈로그)

사. 제조(가공)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별첨 2)

아. 투입 미생물의 종류, 양, 투입시기 등에 관한 설명서 (미생물 투입 방식인 경우에 해당)

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차. 기타, 조합(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비고〉

1. 인증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은 인증업무 수행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3)

2.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Ⅲ. 인증심사(공장심사 당일)때 준비사항

- 가. 사내표준 2부 (절차서/규정, 지침서/규격)를 심사중 각 심사원이 볼 수 있도록 제공
(사내표준 목록은 2부 복사하여 각 심사원에게 별도로 제공)
- 나. 회사소개서 (심사원에게 브리핑 - 회사 개요 및 공장심사보고서에서
규정한 품질관리 실적을 요약하여 심사 시작회의 때 설명)
- 다. QC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 라. QC추진 실적(사내표준에 따라 시행한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중간검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관리 등 관리 실적-서류)
- 마. 제품 생산·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
(최근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자체적으로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바. 인증 신청시 조합에 제출 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전부) 제시

Ⅳ.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 시험·검사)

제품심사(시험의뢰)는 인증심사시 공장심사에 합격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공장심사 불합격시 제품심사 진행 하지 않고 심사 종결) 다만, 공장심사 이전에 공장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인시험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우리조합과 업무협약 된 시험기관) 에서 받은 시험성적서(합격 판정)가 있는 경우 제품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제품의 품질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 나. 만약, 인증신청업체에서 심사제품과 동일한 제품(종류, 모델 등 일치)에 대하여 단체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2년 이내에 공인시험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에서 받은 시험성적서(합격 판정)가 있는 경우 그 시험성적서를 제품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인증업무 절차도』 비고 참조)
- 다. 단체표준에서 정한 음식물 폐기물 표준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서 단체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지정한 시험자와 협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제품의 품질기준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것에 따름
2. 시료의 크기 (n)는 통상 1대임
3. 제품의 품질시험은 시험기관의 시험자가 시험항목에 따라 업체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에 시료를 보내어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 함
4. 시험방법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것에 따름
5. 시험은 1회로 종료되며, 시험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가 결정 되므로 시험 이전에 자체적으로 품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준에 준하여 평소에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사전에 품질을 검증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시험이 종료되면 결과의 합부에 관계 없이 이미 지불된 시험 수수료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품질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공장심사시 자체 품질관리 실적 확보 또는 인증을 위하여 제품(처리)에 대한 시험·검사 실적 (자체검사 결과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 한 시험성적서) 이 필요합니다.
8.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등이 인증업무와 연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합 인증 담당 이사와 협의를 거쳐서 시험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단체표준 인증업무와 연계 또는 단체표준 인증에 활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제반 비용 (수수료)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가. 나. 다.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습니다.

가. 인증 또는 정기심사 신청 수수료

(1) 서류심사 및 행정 수수료, 공장심사비 및 인증심사원 수당

- 인증심사 : 180만원 × 2일 = 360만원 (인증심사원 2명 × 2일)
- 정기심사 (인증 후 2년마다 제품심사, 인증 후 3년마다 공장심사)
: 180만원 × 1일 = 180만원 (인증심사원 2명 × 1일)

※ 심사원 수당 : 『제조업 고급 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에 따름

(2) 출장비 : 조합에서 정한 금액

(심사원 2명 / 필요시 참관 인원 1명 추가)

나.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 수수료 (KOLAS 공인시험기관)

: 조합과 KOLAS 공인시험기관 (KTC, KTR, KCL 등)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
10페이지~11페이지(별첨 4) 참조

다. 인증서 발급 및 사용 수수료

(1) 인증시 : 주 제품(Main) 1건당 300만원, **등급추가**제품 1건당 50만원

※ 주제품(Main product)과 **등급추가**제품의 구분은 처리방식, 구조, 성능 등을
감안하여 조합에서 결정합니다.

(인증심사기준 『차.제품의 인증구분』 참조)

(2) 인증 후 3년 (정기 공장심사)마다 인증서 재발급시

: 주 제품 1건당 200만원, **등급추가**제품 1건당 50만원

<비고> 제반 비용(수수료)은 현금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VI. 제품의 표시사항

: (별첨 5)에 따릅니다.

별첨 1.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서』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서											
회 사 현 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			팩스		
		공장				전화			팩스		
	설립연월일				공장규모(공장등록증)	건물 :	m ²	대지	m ²		
	인허가 사 항	KS인증()			인증서 첨부	ISO/KS A 9000()			인증서 첨부		
		KC인증()			인증서 첨부	기타(NET·NEP·외국) 등			인증서 첨부		
	자본금(대차대조표)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출액(A) (손익계산서)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상이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 (교육훈련비/C)			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 개발비/A)				%	공정 자동화율 (자동화 공정/전체공정)			%		
중 업 원 수 (C)	경영간부	명	사무직	명	설비자동화율				%		
	기술 직	명	기 타	명	자동화 공정/전체공정				%		
	합 계 :	명 (의료보험료, 명세서)			KS원부자재 사용률				%		
신 청 품 목	표 준 명				표 준 번 호						
	종류 · 등급 · 호칭(모델명)	건조식, 발효식(배출수방식?), 발효건조식(배출수방식?), 1 kg 이상 ~ 5000 kg 미만									
체 받 기 표 은 인 준 단 증	인 증 번 호				인증일자			표 준 명	표준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 품 당 질 자 관 리	자 격 구 분				연락전화번호						
	자격증명, 교육과정명				(e-mai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 표시 인증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수수료	인증가이드 V. 제반 비용(수수료)참조										
첨부 1. KS, KC 또는 ISO 9001 인증서(해당하는 경우) 2.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3.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4. 신청품목의 모델별 도면(주요 성능의 구조 확인이 가능한 것) 5. 투입 미생물의 종류, 양, 투입시기 등에 관한 설명서(미생물 투입 방식에 한함)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7.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별첨 2. 『제조가공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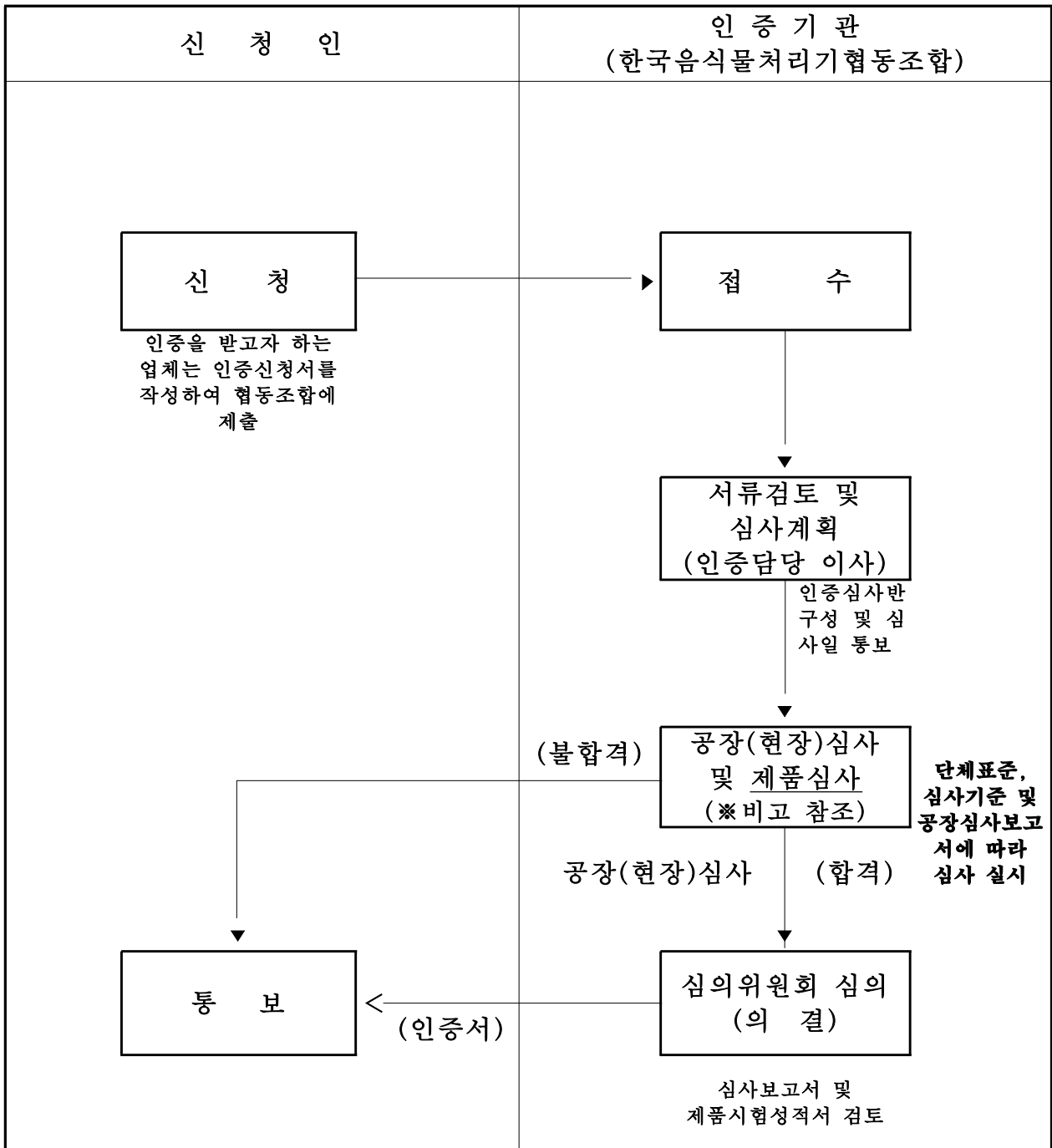
제조(가공) 설비 보유현황

NO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용량/공칭능력	제 작 사	설치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 고
1	예시) 선 반	3	1 230×2 050 mm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시고 한칸 띄세요	범진기계	2011. 08 ※연도와 월 사이는 띄세요	2011. 08. 23 또는 해당없음	자체설비
1	※설비대수가 1대 이상 인 경우 필요한 만큼 칸을 나누세요 !	※ 인증심사 기준에 규정 된 법정설비를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2							
3							
4							
5							
6							
7							
8							
9							

시험(검사) 설비 보유현황

NO	보유설비명	보유대수	용량/공칭능력	제 작 사	구입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 고
1	버니어캘리퍼스 (작성 예)	3	150 (0.05) mm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 고 단위 와 숫자는 한칸 띄 세요	MITSTOYO	2009. 08 ※연과 월 사이는 띄세요	2011. 08. 23 (산업기술원) ※연,월,일 사 이는 한칸씩 띄세요	자체설비
1	※설비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 칸을 나누세요 !	※ 인증심사 기준에 규정 된 법정설비를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2							
3							
4							
5							
6							
7							
8							
9							

별첨 3. 『인증업무 절차도』



※ 비 고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5조 제7항(2018.11.19.)에 의거 인증신청업체에서 심사제품과 동일한 제품(종류, 용량, 모델 등 일치)에 대하여 단체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공인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공장심사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합격 판정)가 있는 경우 그 시험성적서를 제품심사에 활용 할 수 있다.

즉, 단체표준에서 정한 전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제품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공인 시험성적서에 누락 된 검사항목이 있으면 그 누락된 검사항목은 별도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별첨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검사항목별 시험 수수료』

□ 음식물 처리기 시험 수수료 (KTC)

검 사 항 목		품 질 기 준 (본문 참조)	시험방법	시험수수료(천원)	
처리용량 - 추가		표시사항에서 명시한 처리용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 처리용량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2에 따름	80	
겉모양		단체표준 부속서 A ~ C 의 a)~d)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3에 따름	80	
감량률 (질량, %)		75 이상(발효식은 50 이상)	개정 표준 본문 8.4에 따름	1200	
소음 [dB(A)]		65중급속 (mg /kg)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5에 따름	200	
악취 (희석 배수)	배출(유출)구	500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6에 따름	825 (2020.2.19.일자로 25,000원 인상)	
	1m 지점	15 이하			
고형물 배출율 (%) [배출(유출)수가 있는 경우]		20 이하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	개정 표준 본문 8.7에 따름	2000	
최종 부산물 의 품질	함수율(%)	건조식(20미만), 발효식, 발효건조식(40미만),	개정 표준 본문 8.8.1에 따름	50	
	유기물 함유율 (%) - 추가	건조식(40이상), 발효식, 발효건조식(45이상)	개정 표준 본문 8.8.2에 따름	200	
	중급속 (mg /kg)	As	50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8.3에 따름	200
		Pb	150 이하		
		Hg	2 이하		
Cd	5 이하				
처리시간 (h) (건조, 발효, 발효건조 시간)		24 이내	개정 표준 본문 8.9에 따름	0	
표시 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량이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표시값 대비 10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 표준 본문 8.10에 따름	200	
표시사항		단체표준 본문 10.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한 것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11에 따름	80	
계				5,115 (VAT별도)	
5,626.5 천원 (VAT포함) - 출장비, 행정수수료 등 일부 부대비용 별도					

- <비 고> 1. 고형물 배출율은 처리방식이 배출수 방식인 것에만 해당한다.
2. 시험에 따르는 출장비, 행정 수수료 등 일부 부대비용은 별도 임

□ 음식물 처리기 시험 수수료 (KTR)

세 부 내 역							
1. 인건비		1,800,000					
	책임연구원	1	×	5,000,000	×	1.0 월 × 20 %	= ₩ 1,000,000
	주임연구원	1	×	4,000,000	×	1.0 월 × 20 %	= ₩ 800,000
							소계 ₩ 1,800,000
2. 시험의뢰비							
2.02.01	처리용량	:	60,000	×	1 회	=	₩ 60,000
2.02.02	검모양	:	60,000	×	1 회	=	₩ 60,000
2.02.03	감량율(질량, %)	:	1,000,000	×	1 회	=	₩ 1,000,000
2.02.04	소음	:	160,000	×	1 회	=	₩ 160,000
2.02.05	악취(희석배수)	:	800,000	×	1 회	=	₩ 800,000
2.02.06	고형물배출율	:	1,600,000	×	1 회	=	₩ 1,600,000
2.02.07	부산물의 품질(합수율)	:	40,000	×	1 회	=	₩ 40,000
2.02.08	부산물의 품질(유기물 함유율)	:	160,000	×	1 회	=	₩ 160,000
2.02.09	중금속(As, Pb, Hg, Cd)	:	160,000	×	1 회	=	₩ 160,000
2.02.10	처리시간	:	-	×	1 회	=	₩ -
2.02.11	표시 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	160,000	×	1 회	=	₩ 160,000
2.02.12	표시사항	:	60,000	×	1 회	=	₩ 60,000
							소계 ₩ 4,260,000
3. 시료 이송비(1회 이송)	:						₩ -
4. 유인물비	보고서 0 부	×	0 부	×	10,000 원	=	₩ -
5. 기술료	:	(시험비+인건비)의 30 %					
			6,060,000	×	30 %	=	₩ 1,818,000
6. 출장비 (별도)	:	-	×	2 명	×	1 회	= ₩ -
총 계	:						₩ 7,878,000

- <비 고> 1. 고형물 배출율은 처리방식이 배출수 방식인 것에만 해당한다.
2. 시험에 따르는 출장비 등 일부 부대비용은 별도 입

□ 음식물 처리기 시험 수수료 (KCL)

검 사 항 목		품 질 기 준 (본문 참조)	시험방법	시험수수료 (천원)	
처리용량		표시사항에서 명시한 처리용량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 처리용량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2에 따름	53	
겉모양		단체표준 부속서 A ~ C 의 a)~d)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3에 따름	53	
감량률 (질량, %)		75 이상 (발효식은 50 이상)	개정 표준 본문 8.4에 따름	1,260	
소음 [dB(A)]		65중급속 (mg /kg)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5에 따름	200	
악취 (희석 배수)	배출(유출)구	500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6에 따름	984	
	1m 지점	15 이하			
고형물 배출율 (%) [배출(유출)수가 있는 경우]		20 이하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	개정 표준 본문 8.7에 따름	1,700	
최종 부산물 의 품질	합수율(%)		개정 표준 본문 8.8.1에 따름	584	
	유기물 함유율 (%)		개정 표준 본문 8.8.2에 따름		
	중급속 (mg /kg)	As	50 이하		개정 표준 본문 8.8.3에 따름
		Pb	150 이하		
		Hg	2 이하		
Cd		5 이하			
처리시간 (h) (건조, 발효, 발효건조 시간)		24 이내	개정 표준 본문 8.9에 따름	0	
표시 소비전력량 대비 소비전력량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량이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표시값 대비 10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 표준 본문 8.10에 따름	189	
표시사항		단체표준 본문 10.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한 것에 적합할 것	개정 표준 본문 8.11에 따름	53	
기본수수료				5	
계				5,081 (VAT별도)	
5,589.1 천원 (VAT포함) - 출장비 등 별도					

- <비 고> 1. 고형물 배출율은 처리방식이 배출수 방식인 것에만 해당한다.
 2. 본 내용은 시험접수 시 제시되는 시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시험에 따르는 출장비 등 별도
 4. 표준음식물 및 저울은 의뢰자가 준비

별첨 5. 『제품의 표시방법』

: 단체표준 10. 제품의 표시방법 (표 3)에 따름

☞ 인증심사 및 인증에 관한 문의 연락처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5 http://www.kfpec.or.kr 전화 : 070-4195-1555~6(1577-0537) 팩스 : 02)974-7277
전무이사 (김영배)	E-Mail : kyb5464@naver.com 휴대폰 : 010-6216-9938
전문위원(이재효) 공학박사, KS인증심사원 단체표준인증심사원	pl5286@hanmail.net 휴대폰 : 010-6288-2378
과장 (변혜성) 단체표준인증심사원	seres84@naver.com 휴대폰 : 010-8767-1590